

코로나19 관련,
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(7차)
일부 변경(2차)

2020. 12. 22.



보건복지부
요양보험제도과



코로나19 관련

‘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(7차)’ 일부 변경(2차) 안내

□ 관련근거

- “코로나-19 관련,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(7차)”
(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-1827호, 2020. 6. 29.)

□ 목적

-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「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7차) 일부 변경(2차)」 안내

□ 기본원칙

- 동 지침은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**‘20.12월~’21.1월에 한하여**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임
 - 코로나-19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정기간 확대가 가능하며 동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특례 기준은 7차 지침에 준해 적용함

연번	특례별 구분	7차 변경(12월) 지침 주요 내용	적용월						
1	종사자 '월 기준근무시간' 인정 특례	• (예방적 격리) 최대 10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	12월~ 21.1월						
2	주야간보호 '한시적 코로나 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산정 기준	• 휴원 이행기관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○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70%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</td></tr><tr><td>최소 이용일수</td><td>○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2020. 11월 중 최소 1일 이상 이용자</td></tr><tr><td>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</td><td>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 전액 산정 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 초과~5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40% 전액 산정 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50% 초과~7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% 전액 산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</td></tr></table>		구분	○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70% 이하 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	최소 이용일수	○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2020. 11월 중 최소 1일 이상 이용자	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	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 전액 산정 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 초과~5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40% 전액 산정 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50% 초과~7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% 전액 산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
구분	○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70% 이하 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								
최소 이용일수	○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2020. 11월 중 최소 1일 이상 이용자								
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	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 전액 산정 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% 초과~5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40% 전액 산정 ○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50% 초과~7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% 전액 산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								
3	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	• '20.11월(급여제공월)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방문형 종사자가 '20.12월~'21.1월에 30분 이상~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- '20.11월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							
4	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	* '20.12.1.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 - '20.12.1.~'21.1.31. 유효기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							
5	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	• 방문상담(1회)을 원칙으로 하되, - 수급자(보호자) 거부 시 유선상담(주1회 또는 월4회) 대체 인정							

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변경사항

구분	7차 지침	7차 일부변경(2차) 지침
적용월	2020.7.~	2020.12.~2021.1. (2개월간)
종사자 '월 기준근무시간' 인정 특례	· (확진자)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 · (격리자)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· (예방적 격리) 최대 7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	· (확진자)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 · (격리자)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· (예방적 격리) 최대 10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
주야간보호 '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산정 기준	· 휴원 이행기관 - 휴원 권고 연장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'2022.9.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 내 '2022기준의 월 평균 현원 대비 해당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30%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 - (대상)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중 '2022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이용자 - (비용)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60% (공단이 전액 부담)	· 휴원 이행기관 -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정원 대비 해당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70%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 - (대상)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중 '2011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이용자 - (비용)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20~60% (공단이 전액 부담) ①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3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 전액 산정 ②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30% 초과~5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40% 전액 산정 ③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50% 초과~70%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% 전액 산정
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	-	· '20.11월(급여제공월)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방문형 종사자가 '20.12월~'21.1월에 30분 이상~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- '20.12.~'21.1.(2개월간) 11월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
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	-	· '20.12.1.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 - '20.12.1.~'21.1.31. 유효기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	· 방문상담(1회)을 원칙으로 하되, -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·격리 시 유선 상담(월 2회) 대체 - 수급자(보호자) 거부 시 유선상담(주 1회) 대체만 인정	· 방문상담(1회)을 원칙으로 하되, -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·격리 시 유선 상담(월 2회) 대체 - 수급자(보호자) 거부 시 유선상담(주1회 또는 월4회) 대체 인정

1. 시설급여 등 종사자 ‘월 기준근무시간’ 인정 특례기준 변경

-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예방적(코호트)격리의 필요성이 증가 됨에 따라 시설급여기관,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등이 예방적(코호트)격리 또는 시설장의 판단 하(주야간보호 휴원 등)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 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한 경우, 유급을 전제로 근무시간 인정 가능 일수 변경

현행		변경
1일 8시간, <u>최대 7일 범위 내에서</u> 근무시간 인정	⇒	1일 8시간, <u>최대 10일 범위 내에서</u> 근무시간 인정

- (적용월) 변경된 기준은 ‘20.12월~’21.1월 급여제공분에 한하여 인정

※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다른 ‘병가일수’와 별도산정 가능(‘예방적 격리’ 코드)하며, 해당 사유로 ‘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’를 인정 받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

- (인정대상) ▲예방적(코호트) 격리(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조치) ▲ 적극적 업무배제(종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나 코로나-19 감염 우려로 인한 증상 모니터링 또는 코로나-19와 관련된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 일정기간 업무배제가 필요한 경우)

- (인정기준) ‘예방적(코호트) 격리’ 또는 일부 종사자의 ‘적극적 업무배제’를 시행하는 경우, 해당 기관은 사전에 반드시 ‘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*’를 수립·작성하고 5년간 보관

* 대상 종사자, 해당 직종, 실시기간, 필요사유(상황), 관련 증빙내용, 대체 인력운영 계획 등 포함(7차 지침 붙임 참조)

2.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변경

-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이 휴원 권고를 받고 실제 휴원 이행 시, '한시적 코로나-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인정 확대 운영
 - *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은 기존 7차 지침에 따름
 - (기본원칙)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 정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**70% 이하**(소수점 이하 반올림)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에 대해 '코로나 특례비용' 산정
 - * 기존 고시(제32조제3항) '미이용일 급여비용' 월 5일은 고시 기준 충족 시에 산정 가능하므로 기관이 선택하여 청구 가능
 - (대상) '20.11월 최소 1일 이상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일자만 적용'
 - * 20.11.1.~11.30. 기간내 단 1일이라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
 - (인정비용) 전월 말일 기준 공단에 해당 수급자의 급여일정이 적기 통보된 일자(월~금요일(근로자의 날 포함), 공휴일 제외)에 미이용 시 **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%~60%** 차등 지급(본인부담금 포함)
 - * 반드시 전월 말 기준 적기통보 내역(일정등록 포함)만 산정 가능하며, 당월 수정(추가) 통보 건은 산정 불가(사망일, 해외출국일 적용불가)
 - * 일자별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에 따른 인정비용 세부기준
- | 구분 | 해당 일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30% 이하 | 30% 초과 ~ 50% 이하 | 50% 초과 ~ 70% 이하 |
|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
(이용예정 급여비용 기준) | 60% | 40% | 20% |
| 본인부담금 포함한 전액 공단 지급 | | | |
- (적용월) 변경된 기준은 '20.12월~21.1월 급여제공분에 한하여 인정
 - (본인부담금)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...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수납
 - (월 한도액) 미포함 ... 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'은 현행대로 포함됨
 - *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해당 월 '실제 이용한 급여비용'과 '미이용일 산정비용'(기존 고시상 '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'코로나 특례비용)의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 월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

3.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

- 코로나-19 감염우려로 인해 방문형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하여 타의로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산정
 - (대상)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, 간호(조무)사, 치과위생사 ...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
 - (인정기준) '20.11월 (급여제공월)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받은 대상자가 '20.12월~'21.1월에 각각 30분 이상 ~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
 - (산정금액) '20.11. (급여제공월)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
 - ※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'근무기간 산정' 시에는 해당 월 미포함.
 - (적용월) '20.12.~'21.1. (2개월간) 급여제공월 기준

4.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

- 방문간호 시설장이 수급자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코로나-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,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 연장
 - (대상) 유효기간이 12.1.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
 - (적용월) '20.12.1.~'21.1.31. (2개월간)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함
 - ※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함

5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기준 변경

- 사회복지사가 매월 계획한 방문상담 일정이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수급자의 방문거부 시 **대체 인정하는 유선 상담기준 변경**

현행	변경
<u>방문상담(월 1회)을 유선상담(주 1회)으로 대체 인정</u> *급여제공 중(급여제공시간) 주 1회 (월~일요일 기준) 유선상담(수급자, 종사자)하여야 인정함.	유선상담 대체 인정횟수를 <u>주 1회에서 주 1회 또는 월 4회로 변경</u> (유선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) * <u>급여제공 중(급여제공시간) 주 1회 또는 월 4회 유선상담하고</u>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'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'에 기재

- (적용월) '**20.12.~'21.1. (2개월간)** 급여제공월 기준
- 월 초 사전조사를 통해 수급자가 코로나-19 확산 등 감염 우려로 방문상담 거부 시, **주 1회 또는 월 4회 실시한 유선상담도** 방문상담(월 1회)으로 인정
 - * 수급자(보호자) 거부시 방문상담이 불가한 상황에 대한 **입증자료 또는 사실관계 기록** (세부사항 별지 제24호 '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')을 보관

☞ 방문요양 기관은 월 초에 수급자의 방문상담 거부 여부를 사전에 파악 후 계획대로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**수급자 돌봄 공백 발생 등을 예방**하고,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특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- ※ 해당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**기준 이외의 내용**(코호트 격리,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,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,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인력 배치 의무 특례)은 **기존 7차 지침에 따르며**, 해당 지침 종료 후에는 '**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(7차)**' 적용 예정